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본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퇴직연금보험의 특징

이 퇴직연금보험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대상 (DB제도 제외)	예금자보호 비대상
원금손실	원리금 보장	원금손실 가능성 존재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	계약자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이율보증형보험 중도해지 시 이율

Q.이율보증형 보험에 가입 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였는데 이전시점에 사전에 안내 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된 경우
A.원리금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사전에 공시되어 있는 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며, 만기 이전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② 이율보증형보험 상품 교체 시 이율

Q.이율보증형 보험에 가입 후 만기일 도래 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교체하였는데 교체시점까지 이자가 줄어들어 해당 시점 적립금 평가금액보다 작아진 경우
A.원리금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만기 전에 교체 할 경우, 해당 상품은 중도해지되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을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이율관련해서는 상품설명서 참고)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1588-7937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2262-6565
			인터넷 상담	http://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www.fcsc.kr/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 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약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특징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제도)
개 요	·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사전 결정 · 사용자가 사외 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사전 결정 ·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운용	· 퇴직급여 또는 추가납입금 적립/운용 · 가입자가 자기책임하에 운용
위험부담주체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가입자
부담금	· 연금계리방식	·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 가입자 추가부담금	·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 가입자 추가부담금
급여액	· 퇴직금 제도와 동일 (최종 평균임금 × 근속년수)	· 부담금 ± 운용수익	· 부담금 ± 운용수익
급여형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단, 법에서 정하는 사유는 예외)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지급절차	급여청구 (서류 구비 후 콜센터, 팩스, 인터넷, 업무팀으로 접수) → 심사 → 지급		
가입자	· 근로자	· 근로자	· 가입자 (개인)
수익자 ¹⁾	· 가입자	· 가입자	· 가입자 (개인)
중도인출	· 불가	· 조건부 가능 ²⁾	· 조건부 가능 ²⁾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수수료	계약서류(약관 등) 및 DB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실 참조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공시실 - 퇴직연금공시실 - 원리금보장형 - 공시이율)		

1)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입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함

2)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임대보증금 부담 시,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 상품 개요

구 분		이율보증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유형		원리금 보장형	원리금 보장형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종류		1년/2년/3년/ 5년 기간지정식	월 단위 금리연동	· 채권혼합형(4종): 일반혼합형, 가치주혼합형, 그로스혼합형, 액티브 혼합형 · 채권형(2종) : 채권형1호,채권형2호/ · 디폴트옵션 (3종): TDF 2025, 2040, 2050
예금자 보호여부	DB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DC / IRP	해당	해당	

(무) DB손해보험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상품명	(무)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보험		
상품제공기관	DB손해보험		
상품특징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상품		
적용이율 만기	1년, 2년, 3년, 3년(디폴트옵션), 5년, 기간지정식(180일~1,095일)		
중도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자율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1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90%
	2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80%
		1년 이상 ~ 2년 미만	적용이율 X 90%
	3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70%
		1년 이상 ~ 2년 미만	적용이율 X 80%
		2년 이상 ~ 3년 미만	적용이율 X 90%
	3년형 (디폴트옵션)	1년 미만	적용이율 X 80%
		1년 이상 ~ 2년 미만	적용이율 X 90%
		2년 이상 ~ 3년 미만	적용이율 X 90%
	5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50%
		1년 이상 ~ 3년 미만	적용이율 X 60%
		3년 이상 ~ 5년 미만	적용이율 X 70%
	기간지정식	전기간	적용이율 X 70%
특별중도해지 사유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 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만기일 ± 5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8.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각하는 경우 9.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각하는 경우		
만기 후 처리	[DC/IRP]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 [DB]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 재예치되며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		
예금자보호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 DB손해보험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II 보험

상품명	(무)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II		
상품제공기관	DB손해보험		
상품특징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상품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보다 만기별로 최소 0.10%p 높게 결정		
적용이율 만기	1년, 2년, 3년, 5년, 기간지정식(180일~1,095일)		
중도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자율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1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75%
	2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70%
		1년 이상 ~ 2년 미만	적용이율 X 80%
	3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65%
		1년 이상 ~ 2년 미만	적용이율 X 70%
		2년 이상 ~ 3년 미만	적용이율 X 80%
	5년형	1년 미만	적용이율 X 50%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적용이율 X 65%
		4년 이상 ~ 5년 미만	적용이율 X 70%
	기간지정식	180일 이상 ~ 545일 미만	적용이율 X 60%
		545일 이상 ~ 910일 미만	적용이율 X 65%
		910일 이상 ~ 1,095일 미만	적용이율 X 70%
특별중도해지 사유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 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만기일 ± 5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8.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각하는 경우 9.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각하는 경우		
만기 후 처리	[DC/IRP]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 [DB]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 재예치 되며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		
예금자보호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당사와의 개별상품 계약 체결 시 동법 상의 설명 의무 위반 또는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의 발생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의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고객센터 (☎1588-7937) 및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